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1. .

국토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10월 28일, 권영진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 2024년 10월 2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4.12.23.)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025.9.23.)

상정 · 축조심사 · 수정의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5.9.25.)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수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국회의원 권영진)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신도시 등 개발 시 장래 입주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추진 중이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인·허가 지연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도로사업도 빈번하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광역교통 개선대책 중 도로사업의 경우 국토부가 승인하여 고시한 경우 토지 등의 수용·사용권을 부여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권영진의원 대표발의)되어 있는 만큼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도로사업을 추가하고자 함.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개정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이라 함)에 따른 도로사업’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0조에 따른 사업 인정이 의제되는 사업으로 추가하기 위하여 같은 법 별표 제2호(96)을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 「토지보상법」 제4조에서는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열거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같은 법 제4조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에 따라 「토지보상법」 별표에서는 총 114개의 법률에 근거하여 토지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이 중 현행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은 총 95개임.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등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종합적 검토를 거쳐 사업인정 여부를 결정함.

개정안이 「토지보상법」 별표 제2호에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으로 추가하려는 ‘「광역교통법」에 따른 도로사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대표발의, 제2203392호, 이하 “광역교통법 개정안”이라 함) 제7조의7에 따른 도로사업(이하 “광역교통 개선대책 도로사업”이라 함)임.

「광역교통법 개정안」은 광역교통 개선대책 내 주요 도로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사업계획을 승인·고시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관계된 인허가의 의제 및 토지 수용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광역교통법」에서는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함)에 걸치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를 ‘광역도로’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광역교통법」 제7조의5, 「토지보상법」 제4조제2호 및 같은 법 별표 제2호 등을 종합하면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된 광역도로의 건설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공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상 기반시설 설치사업으로서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함.

그런데, 현행 「광역교통법」에 따르면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된 광역도로의 건설 시 사업시행자가 도로관리청이 아닌 경우, 관할 도로관리청의 도로구역 결정·고시에 이어 사업시행자가 공사허가 및 사업인정을 받은 이후 토지보상 및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어, 통상적으로 보상착수 관련 사업승인 절차에 약 2.5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광역교통법 개정안」 제7조의9의 ‘토지 등의 수용 등’ 규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법 개정안」 제7조의7제4항에 따라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하여 고시한 때에는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 도로사업의 보상절차를 앞당기는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광역교통법 개정안」은 광역교통 개선대책 도로사업의 신속한 이행을 도모하여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적기에 해소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되며, 국토교통부는 「광역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사업계획을 직접 승인·고시할 경우 착공에 이르기까지의 소요시간은 총 1년으로 현행 대비 약 1.5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임.

이에 「토지보상법」 별표 제2호에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으로 ‘「광역교통법」에 따른 도로사업’을 추가하려는 개정안은 「광역교통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광역교통법 개정안」 제7조의9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등’의 특례 규정과 「토지보상법」 간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같은 법 제4조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서만 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 「토지보상법」 제4조의2를 고려할 때, 「광역교통법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광역교통법 개정안」은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도로사업에 대한 보상절차를 앞당겨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광역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토지 등의 수용 등’의 특례 규정이 반영되는 경우 법률간 정합성을 위해 「토지보상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현행 「토지보상법」에 도로사업이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어 개정안에 따라 별표 제2호(96)이 신설되더라도 토지등의 수용·사용이 가능한 공익사업의 유형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 권영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1036호, 2025. 8. 26. 일부개정·시행)에 따라 별표 제2호에 ‘(96)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신설되었으므로, 이에 맞추어 별표 제2호에 신설되는 항목의 조문번호를 수정하고, 안 부칙의 시행일을 시행의 근거가 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에 맞추어 조정함.

6. 심사결과

수정의결

7.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과정을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불임서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9. .

제 안 자 : 국토교통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1036호, 2025. 8. 26. 일부개정·시행)에 따라 별표 제2호에 ‘(96)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신설되었으므로, 이에 맞추어 별표 제2호에 신설되는 항목의 조문번호를 수정하고, 안 부칙의 시행일을 시행의 근거가 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에 맞추어 조정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표 제2호(9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로사업 중 “(96)”을 “(97)”로 한다.

안 부칙 중 “공포한 날부터”를 “2025년 10월 23일부터”로 한다.

법률 제 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에 (9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로사업

부 칙

이 법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